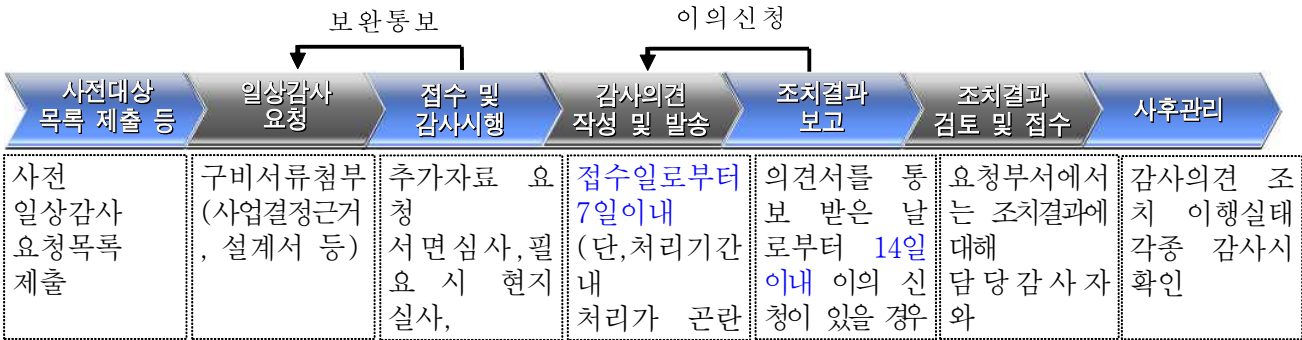


중랑구 일상감사 대상사업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감사담당관 ☎ 02-2094-0223

□ 추진절차



□ 대상업무별 일상감사 기준

계약업무(공사, 용역, 물품 등)

- 공사, 용역, 물품 제조·구매, 기타 계약
 - ▶ 공사 :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
 - ▶ 용역 :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
 - ▶ 물품의 제조·구매, 기타 :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
- 국·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·매입에 대한 계약(건당 1억원 이상)
 - ▶ 단, 공유재산심의회 등에서 심의·심사한 경우 제외
- 연간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
 - ▶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
 - ▶ 설계변경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
 - ▶ 다음과 같이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
 - 2천만원 이상 사업 : 30% 이상 증·감
 - 5천만원 이상 사업 : 20% 이상 증·감
 - 1억원 이상 사업 : 10% 이상 증·감

주요정책 집행업무

-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 : 5천만원 이상
- 구청장, 부구청장의 정책사업 지시사항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 기능 관련 과제 : 3천만원 이상 예산 수반시
- 민간보조사업,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: 1억원 이상 예산 수반시

예산관리업무

- 예산의 이·전용 및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: 건당 3천만원 이상
-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: 건당 3천만원 이상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
-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: 건당 1백만원 이상
- 기관의 주거래 은행(금고)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기타 일상감사업무

- 예산·회계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·개정 사항
- 소속 직원의 임용, 포상·징계 등 인사에 관한 주요한 사항
- 공무원 참여 등 일정 규모(50명) 이상의 각종 워크숍, 연찬회, 세미나 개최
- 금품 수수사례 발생등으로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

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市계약심사과 ☎ 02-2133-3325(~3332)

- ☐ 의뢰시기 :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
 - ☐ 심사대상 : 서울시 재배정사업 및 국·시비보조사업
 - ☐ 기준금액 : 추정금액 기준(추정가격 + 관급자재비 + 부가가치세)
 - 공 사 : 5억원(조경·전기·통신 및 설비공사 3억원) 이상
 - 용 역 : 2억원(학술 및 일반용역 1억원) 이상
 - 물품제조구매 : 2천만원 이상
 - 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시행
 -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인 공사
 -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% 이상인 공사
- ♣ 관련근거 :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(2012.5.31.)
- ※ 「조달발주 대상사업」 및 「기술용역타당성 심의」를 받은 기술용역은 제외

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심의 대상사업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市기술심사담당관 ☎ 02-2133-8570

- ☐ 심사대상
 -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: 용역비 1천만원 이상 모든기술용역
 - 용역발주 심의 : 용역비 2억원 이상 설계용역
 - ※ 토목·건축 분야(2억원 이상), 전기·기계·조경 분야(1억원 이상)
 - ☐ 요청시기
 -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: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, 설계공모 기술용역은 공모 전
 - 용역발주 심의 : 용역발주 전(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병행요청 가능)
 - ※ 심사 소요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 요청
 - ☐ 대상용역 : 기술용역 전체
 - 건설기술용역(토목, 건축, 도시계획, 기계, 전기, 조명 등 모든 기술분야)
 - 자치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함
(자치구 용역사업은 “기술용역타당성심사 메뉴얼” 대가기준을 준용)
 - ☐ 제출서류
 - 기술용역타당성심사 :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, 용역시행계획 관련 방침서, 용역비 산출조서, 리스크 관리, 기타 기술용역타당성심사시 참고자료
 - 용역발주심의 : 건설기술심의 요청서,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
- ♣ 관련근거 :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-150호(2014.1.6.)

투자심사 대상사업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市 재정담당관, 기획예산과

☐ 의뢰시기 :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전

☐ 대상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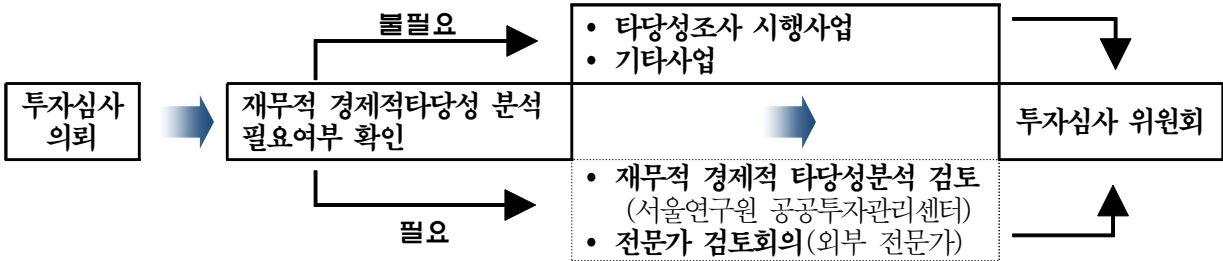
【서울시 심사대상】

- 총사업비가 4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자치구 신규투·융자사업(단,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제외한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자체심사)
-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자치구의 청사 및 문화·체육시설 신축사업
- 2개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이상의 신규 투·융자사업
- 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-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자치구의 신규 투·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, 해외 투자사업

【중랑구 심사대상】

-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·융자사업
- 총사업비 40억원이상이므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·융자사업. 단, 전액자체 재원인 20억원이상과 전액자체재원이 아닌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구 청사 및 문화·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심사 의뢰
-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·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, 해외 투자사업
-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
☐ 심사절차(흐름도)



♣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7조(투자심사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(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) 제64조(재정운용에 관한 보고)
-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규칙(행정안전부령 제30호)

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재 무 과

☐ 심의대상(추정가격 기준)

- 공 사 : 50억원 이상
- 물품·용역 : 10억원 이상

※ 긴급한 재해복구 및 조달청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

♣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108조
-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(2006.6.30)

중랑구 설계변경심의 소위원회 심의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도 로 과

구 분		개 선	비고
금액 기준	소심의	· 신규공종 3,000만원 · 전체 물량증가 증액 5,000만원(신규공종의 합) (단순 수량증감사항은 심의 비대상임)	
	본심의	· 도급공사금액 증액 5억원 이상	
심의 위원	소심의	· 위원장(1) : 도로계획담당주사(하수담당주사) · 위원 (4) : 도로계획(하수), 도로관리(치수)팀 주임 및 주무관 3명, 간사 1명	
	본심의	· 위원장(1) : 도로과장 · 위 원(4) : 도로계획(하수), 도로관리팀 주임 및 주무관 3명, 간사 1명 ※시공사 소장 또는 감리단장 배석 의무 (심의결과에는 관여치 않음)	

※ 건축과 등 기타부서의 영선공사 등 책임감리 시행공사는 위 심의위원 기준으로 자체 설계변경 소심의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분야별 심의위원 선정은 부서 협조로 요청하여 시행함(본 심의는 도로과로 의뢰)

♣ 관련근거

- 설계변경심의 운영 개선 【부구청장 방침, 도로과-4656(2011.6.8)】
-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개선 【본부장, 도시기반시설본부 제393호】

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☐ 통 보 : 해당업체(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용) ⇒ 발주부서 (발주부서확인)
- 통보대상 : 도급금액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
- 통보기한 : 도급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내
- ※ 변경사항이나, 새로운 기재사항도 해당됨, 통보기한이 1달이 아님을 유의
- ♣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, 재무과-3493(2007.4.20)

설계변경시 적용단가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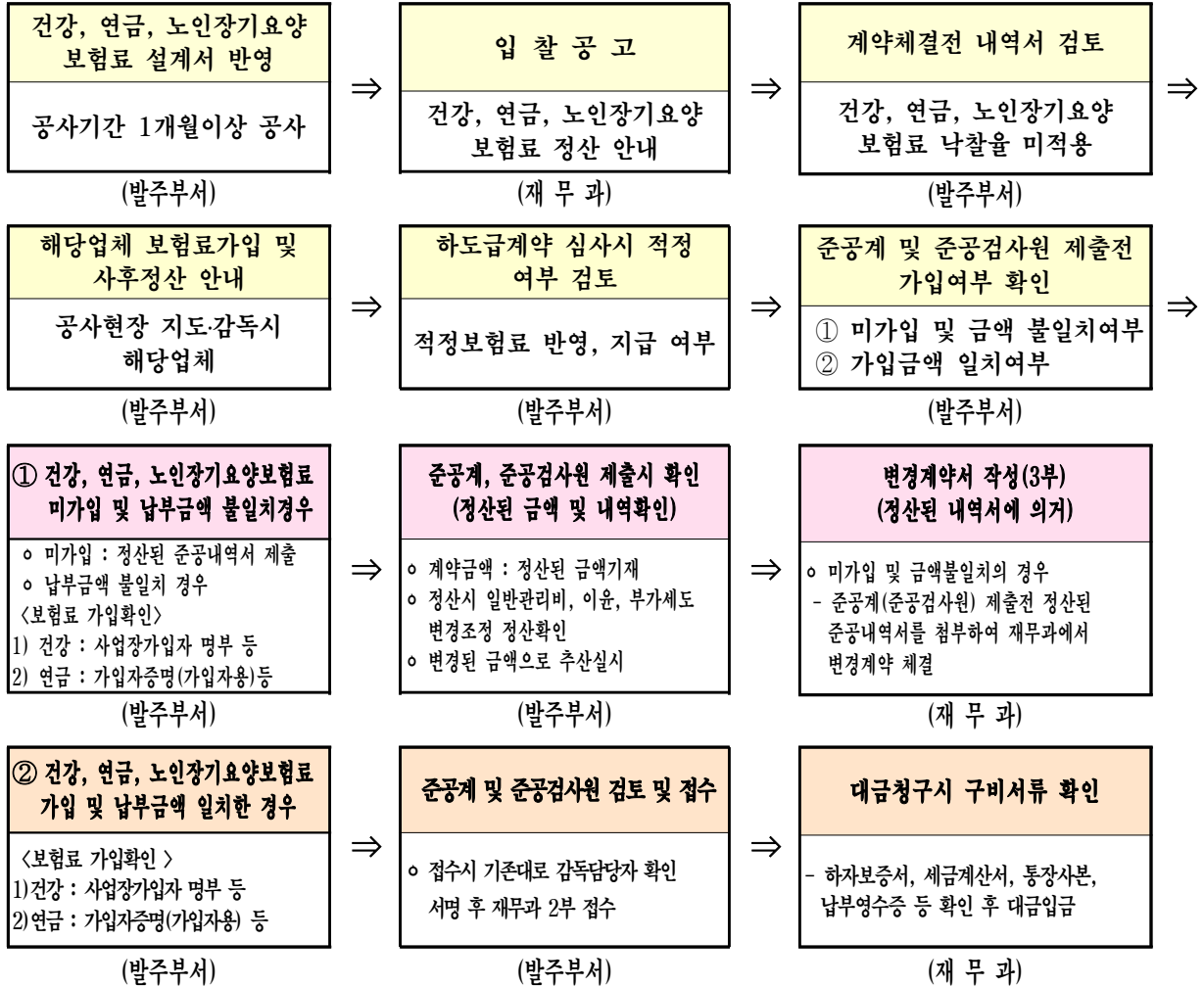
- 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☐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...증감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
- ♣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

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시행시기 : 2007.4.2 이후 공고분 또는 계약분(하도급계약포함)
-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계약예규 제93조)
- 적용대상 :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공사, 공사금액과 관련없음
- 적용대상자 : 일용근로자(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정산)
상용근로자, 현장대리인포함 (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정산)
- 일정별 추진사항 (발주부서, 재무과)
 1. 설계서상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비율 반영여부 확인 (발주부서)
⇒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
※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
 2. 입찰공고시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사항 안내 (재무과)
 3. 계약체결전 설계내역서 검토 (발주부서)
⇒ 계약서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 검토확인시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낙찰율 미적용
 4. 해당공사 지도·감독시 해당업체에 대하여 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가입 및 사후정산 안내 (발주부서)
 5. 하도급계약이 있을 경우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적정보험료가 반영,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하도급계약 심사시 보험료 적정여부 검토 (발주부서)
 6. 해당업체에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제출 전 가입여부 확인 (발주부서 ⇒ 해당업체)
※ 가능한 해당부서에서 해당공사 최종 내역정산시 보험료 가입포함 변경계약 검토 추진
- 가. 미가입으로 가입증명원이 없는 경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
 - 1) 해당업체에 대하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작성제출시 정산된 준공내역서에 의거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작성 제출토록 안내 (발주부서 ⇒ 해당업체)
※ 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시 :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가치세도 요율에 의거 변경조정 정산
 - 2) 정산된 준공내역서에 의거 변경계약체결 (재무과 ⇒ 해당업체)
- ☞ 변경계약관련 해당업체 준비서류
 - 가) 미가입으로 가입증명원이 없는 경우
 - ① 계약도장 ② 변경계약서 3부 ③ 준공내역서 3부
 - 나)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
 - ① 계약도장 ② 변경계약서 3부 ③ 준공내역서 3부 ④ 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
- 미가입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 조치사항 (발주부서)
※ 최종 변경계약 체결된 금액으로 추산
- 나. 설계서상 반영된 보험료와 보험료 가입금액이 일치하는 경우
 - 1)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란에 감독담당자 경유란 서명확인
 - 2)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재무과 제출 2부.
- ☞ 해당업체 제출서류
 - ① 준공계 3부 ② 준공검사원 3부 ③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원
- 7. 해당업체 대금청구시 관련서류 확인 (재무과)
 - ▶ 하자보증서,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, 납부영수증 등 확인 후 대금입금 조치

□ 처리흐름도



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재 무 과

- ☐ **기준금액 :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공사** (다만,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)
- ☐ **대상공사**
- 마을진입로 확장·포장공사, 배수로 설치공사, 간이 상·하수도 설치공사, 보안등공사,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, 마을회관공사, 공중화장실공사
- ☐ **자격기준**
-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
 - 통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
 -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·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
 -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초·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
 -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·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 -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·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
- ☐ **주민참여감독 대상자 선정(발주부서)**
- 선 정 시 기 : 공사시행 방침완료 후부터 ~ 공사계약 체결 이전까지
 - 위촉장 수여 : 발주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후 위촉장 자체제작·전달
- ☐ **주민참여감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발주부서 ⇒ 재무과)**
- 선정결과 통보 : 공사착공 이전까지 재무과로 아래서식에 의거 대상자명단 통보
- | 성 명 | 주 소 | 전화번호
(핸드폰번호) | 자격기준
(예:1통장, 부녀회장 등)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| |
- ☐ **주민참여감독관의 임무 및 감독일수**
- 임 무
 - 당해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구에 전달,
 - 시공과정에서의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
 -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의 감독
 - 감독일수 : 발주부서장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(공사착공, 주요내용 설계변경, 준공검사 등)
- ☐ **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일지 제출 (발주부서⇒재무과)**
-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(감독)조서 제출시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일지를 첨부하여 제출
 - ※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상황 및 확인사항 기재 철저(실비지급 근거)
- ☐ **실비지급 (발주부서)**
- 근 거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
 -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
 - 지급범위
 -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(1일기준 : 20,000원)
 - 지급방법 : 발주부서에서 사업준공 후 주민감독관 활동일지에 의거 대상자에게 무통장 지급
- 따로붙임** 1)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활동일지 2) 위촉장(안)

직접시공계획서 처리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☐ 대 상 :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
- ☐ 직접시공금액
 - 도급금액 3억원 미만 : 50%
 -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: 30%
 -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: 20%
 -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: 10%
- ☐ 제출기한 및 제출처 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(사업부서)
- ☐ 제출방법 : 해당업체에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(문서접수처리)
- ♣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

공사 하자검사 이행 추진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☐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
- ☐ 하자검사 횟수
 - 정기검사 :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
 - 수시검사(최종검사) : 만료 직전 14일 이내 별도검사
- ☐ 하자검사 부서 : 시설물관리 또는 사용부서
- ☐ 하자기간 확인
 - 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공사계약서(하자담보책임기간 기재) 및 준공검사 감독조서(준공검사일) 또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대장에 의거 확인
 - 하자기간 : 준공검사완료일 ~ 하자담보책임기간
 - ※ 하자기간 및 하자보험가입금액(각서) 문의 : 재 무 과
- ☐ 하자검사 조성 작성 비치
 - 하자검사가 많을 경우 일괄작성 할 수 있음.
 - 계약(최종정산)금액이 3,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.
 -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
- ☐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및 기록유지
 - 공사명 및 계약금액, 계약상대자, 준공연월일(준공검사일)
 -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, 그 밖에 참고사항
- ☐ 하자발생시 처리요령
 - 관리(사용)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기관장명의로 직접 하자보수 요청
 - 하자보수 감독 철저
 -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(해당자에 한함)이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증보증서 발급기관(보증기관)에 관련내용 통보
 - ⇒ 보수요청 공문, 하자보증서 사본, 하자보수목록, 사진
 - ※ 보증기관 및 보험가입금액 등 문의 : 재무과

하도급 신고 및 처리절차 [작성예시]

☞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통보기일 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(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※ 1달이 아님)

※ 기간초과 및 미통보시 1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임

□ 하도급신고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: 사업부서

※ 검토보고서 작성예시(반드시 관련 면허사본 확인 후 첨부)

1. 공사현황

- 공 사 명 :

○ 공사기간 :

○ 공사금액 :

○ 공사개요 :

○ 시 공 사 :

2. 하도급 계약현황

하도급공종	도급액	하도급계약현황				비 고
		업 체 명	건설업종명	계 약 일	하도급액	

3. 검토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기 준	검 토 내 용		검토 결과
업종 및 면허	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(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)	00공사업 (- - -)		적정
시 공 능 력	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(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)	○ 시공능력평가액 : 백만원 ○ 하도급액 : 백만원		적정
하도급의 범위	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(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)	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(00건설업 부분하도-00공사업)		적정
하도급의 통보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(하도급의 통보)	계약일	20 . .	적정
		통보일	20 . .	
하도급대금지급보증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	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첨부		적정
하도급계약이행보증	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	00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첨부		적정
기술자 배치	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(건설기술자의 배치)	00분야 고급		적정
하도급율의 적정	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(82% 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)	하도급액		적정
		도 급 액		
		하도급율	. %	

4. 결과통보 : 내부결재 완료 후 공문발송 : 재무과(첨부서류 별도 제출)

공사, 용역, 물품 계약방법 [시행방침시 검토추진]

□ 계약방법

구 분		공 사			용역·물품 기타	비 고
		일반공사	전문공사	전기·정보·소방 기타공사		
일반(공개) 경쟁		2억원초과	1억원초과	8천만원초과	5천만원초과	추정가격 기 준
수의 계약	전자 수의	2천만원 초과 ~ 2억원 이하	2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2천만원 초과 ~8천만원이하	2천만원 초과~5천만원이하	
	일반 수의	2천만원이하	2천만원이하	2천만원이하	2천만원이하	

□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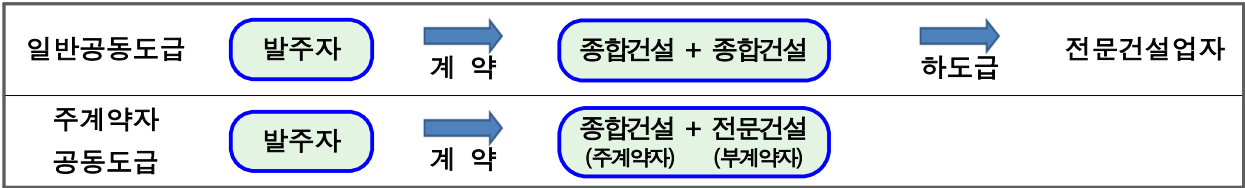
- 계약방법 : 공개경쟁, 전자수의, 일반수의
- 관련근거
 - 공개경쟁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
 - 전자수의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
 - 일반수의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
- ※ 기타 수의계약 : 관련규정 기재

□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

- 일반건설업 : 5
 -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,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, 조경공사업
- 전문건설업 : 29
 - 실내건축공사업, 토공사업, 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, 석공사업, 도장공사업,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,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, 지붕판금·건축물조립공사업,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, 기계설비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, 보링·그라우팅공사업, 철도·궤도공사업, 포장공사업, 수중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, 강구조물공사업, 철강재설치공사업, 석도설치공사업, 준설공사업, 승강기설치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, 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, 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, 난방시공업(제1종), 난방시공업(제2종), 난방시공업(제3종), 시설물유지관리업

주(主)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

- ☐ 목 적 :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탈피 및 하도급자, 근로자의 권리보호
 하도급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비리 발생원인 사전 예방
- ☐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
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88조
- ☐ 적용대상 :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
- ☐ 개 요 :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



※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자 결정방식은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

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

- ☐ 목 적 :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 설치 의무화
- ☐ 적용범위 :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 규정의 건설공사
- ☐ 대상현장
 -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,000㎥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치
 - 진행중인 공사는 진량이 10,000㎥ 이상인 경우
 - 10,000㎥ 이하인 경우도 과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
- ☐ 설치/운영
 -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의 축중기 설치
 - 평탄한 지역에 견고하게 설치
- ☐ 기타사항
 - 발주청은 시방서에 축중기 설치 명시
 - 설치비용은 설계에 반영하고 이미 발주된 현장은 설계변경시 반영
- ☐ 시행일 : 2009년 1월 1일

디자인심의 이행

- ☐ 의뢰시기 : 시설물이 설치되기 전(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전) 이행
- ☐ 심의기준
 - 【서울시 심의대상】
 - 별표 1, 2의 대상시설물중 구청심의대상을 제외한 시설물
 - 【구청 심의대상】 -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」
 -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공공시설물
 - 표준 및 인정된 우수공공디자인 적용 시설물
 - ※ 서울시심의절차 :
 - 사업부서 → 구청 건축디자인과 → 서울시 상정(디자인과 의견첨부)
- ☐ 기타사항 : 서울특별시도시공간개선단

예비관로(공동구) 병행구축 주요 내용

- ☐ 목 적 : 서울시(자치구포함) 각 부서에서 도로 시설물 개선사업 및 굴착공사 시행시 예비관로를 병행 구축하여 확보한 예비관로를 공용(서울시,자치구)으로 활용 굴착공사 방지, 예산 절감 및 도시미관 개선
- ☐ 대상사업 :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도로(차도, 보도) 시설물 각종 공사
(도로조명시설개선, 디자인조성, 도로구조개선, 신호등개선사업, 각종 굴착공사 등)
- ☐ 대상현장 : 서울시 전지역
- ☐ 설치기준
 - 설치구간 : 공사 구간내 시작지점에서 끝지점까지 예비관로 및 맨홀신설
(공사 구간내 시작 및 끝지점 맨홀 신설, 맨홀 상호간 예비관로 신설)
 - 관로규격 : PE전선관(폴리에틸렌) 100mm × 2(차도 : 스틸 100mm× 1)
(도로기준 왕복(상,하) 각각 1개)
 - 맨홀규격 : 맨홀 신설시 → 규격 500×500×700이상 콘크리트, 주철
공사 구간내 교통신호용 맨홀이 있는 경우→신호용 맨홀활용 예비관로 상호연결
 - 분전반 및 맨홀 관로구축 : 분전반↔맨홀(신설) PVC36mm × 2개 연결
(분전반 신설인 경우 분전반에서 신설맨홀까지 배관구축)
 - 관로깊이 : 설치공사 설치규정에 의거 시설
- ♣ 기타사항
 -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
 - 도로교통시설담당관-9613호(2009.6.16.) 및 교통운영과-265호(2011.1.6.) 참조

보도포장 교육 인증제 시행 주요 내용

- ☐ 목 적 :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도 시공품질 제고
- ☐ 대상사업 :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보도공사
- ☐ 대 상 자
 -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1인(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 기술자 중 1인) 및 포장기능공 전원
 - 단순 운반 등 보통인부 제외
- ☐ 시행시기
 - 2011.1.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교육 이수
- ☐ 조치사항(발주기관)
 -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계획 명기
 - 공사 시방서에 공사 착공시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토록 명기
- ☐ 교육과정
 - 교육인증 유효기간 : 2년
 - 교육기간 : 신규교육⇒2박3일 20시간(합숙 교육), 보수교육⇒1박2일 15시간(합숙 교육)
 - 교육기관 :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(충북 음성군 소재, ☎043-879-2412)

하수도공사 교육 인증제 시행 주요 내용

- ☐ 목 적 : 하수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서울시 하수도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수도공사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하수도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
- ☐ 대상사업 :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하수관거 공사
- ☐ 대 상 자
 - 현장대리인, 품질관리자 각1인 및 하수관거 부설 기능공(배관공) 전원
 - 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
- ☐ 시행시기
 - 2011.1.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교육 이수
- ☐ 조치사항(발주기관)
 -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계획 명기
 - 공사 시방서에 공사 착공시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토록 명기
- ☐ 교육과정
 - 과 정 명 :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
 - 교육기간 : 2일 16시간(비합숙 교육)
 - 교육기관 : 한국 상하수도 협회(마포구 아현동 711-2, ☎3156-7811)

서울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

- ☐ 목 적 :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
- ☐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
 - 도로공사 : 신설·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4,000㎡ 이상인 공사
 - 건축공사 : 대지면적 3,000㎡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
 - 관로공사 :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(모래를 포함) 사용 추정량이 500㎡ 이상인 공사
 - 그 밖의 공사 : 10,000㎡ 이상의 공원 조성 등
- ☐ 순환골재의 용도
 - 도로보조기층용, 차단층용, 동상방지층용, 아스팔트콘크리트용, 보도의 보조기층용 및 모래층용, 지상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의 보조기층용,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, 기초다짐용
 - 버림콘크리트 등 비구조용 콘크리트
 - 그 밖의 배수층용 등
- ☐ 의무 사용량
 - 용도별 골재소요량 또는 콘크리트·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소요량의 “2010년에는 15%, 2011년에는 20%, 2012년에는 25%, 2013년에는 30%, 2014년부터는 35% 이상으로 한다.
- ☐ 품질기준
 -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33조 및 『산업기술 혁신 촉진법』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재활용 제품
 - 『산업표준화법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(KS)인증을 획득한 제품
 - 『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
- ☐ 예외규정
 - 순환골재등을 사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한 경우
 - 순환골재등의 수급이 곤란하거나 수급가격이 천연골재등의 수급가격보다 비싼 경우
 - 순환골재등의 사용가능량이 미미하여 수급이 곤란한 경우
 - ※ 순환골재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공사 발주전에 제출

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(One-PMIS)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☐ 등록범위
 - 장기(일반)공사 : 공사비 5억 이상, 공사기간 1년 이상인 공사(공정관리 필수)
 - 단기 공사 : 공사비 2천만원 이상 5억 미만, 공사기간 1년 미만(공정관리 생략)
- ☐ 이용방법
 - 발주청 업무담당자 : 사용자 신청 후 계약현황(공사개요, 계약사항) 등록
 - 시공사(현장대리인) : 사용자 신청 후 착공현황, 참여자, 공정 및 현황 입력
 - 감리사(책임감리원) : 시공사 입력 데이터 확인 후 승인
 - ※ <http://pmis.esoul.go.kr>, 문의 : 도시기반시설본부 ☎ 02-3708-2387

대금 e바로 시스템

문의 및 해당부서 : 발주부서

- ☐

목

적 :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
- ☐

대

상 : 30일 이상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
- ☐

이용방법 :

- 발주청 업무담당자 : 착공시 결제계좌 확인, 노무비 등 내역서 확인 시스템 승인 및 검수후 재무과 통보
 - 시공사(현장대리인) : 착공시 제휴은행에 전자이체 약정 체결(결제계좌), 매월 15일까지 하도급대금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 등 내역 시스템 입력 및 수기제출
 - 재무과 : 확인된 노무비 등 내역서에 의하여 대금 지급
- ※ <http://hado.esecoul.go.kr>, 문의 : 도시기반시설본부 ☎ 02-3708-2373~4

종량구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

문의 및 해당부서 : 재 무 과

- ☐

적용범위

- 물품제조·구매의 경우
 -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2천만원 초과시
 - 특정한 설비·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 제조시
 - 토목·건축 등 공사의 경우
 - 공사금액 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시
 - 공사의 성격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(신기술 포함)의 설계금액(제경비 제외)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
 - 1억원 이상 수입물품 구매·제조 시
- ☐

특정제품(공법) 선정 절차

```

graph LR
    A[① 안전 발생] --> B[② 설계 용역]
    B --> C[③ 건설기술 자문위원회]
    C --> D[④ 사업참여 공고]
    D --> E[⑤ 특정제품(공법)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]
    E --> F[⑥ 설계 확정]
    F --> G[⑦ 예산 요구]
    G --> H[⑧ 일상감사 요청]
    H --> I[⑨ 계약부서 발주(입찰)]
          
```

☐

관련근거

- 특정제품(공법) 선정 절차 개선(방침) : 재무과-13287(2014.11.13.)



보도블록 10계명

희망서울
만민이여 만나는 길

1

보도공사 실명제

아빠가 공사한거야?

보도블록 현장에 시공자, 감리자, 감독관을 기재하겠습니다.

2

원스트라이크아웃제

한번만 걸려도 영업제한 등 강력 제재

보도블록 전면 재시공 사유 1회 발생 시 서울시 공사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.

3

보행자를 안전하게!

임시보행로 확보, 보행안전도우미 배치

보도블록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.

4

보도공사 Closing 11

11월 넘기면 못 한다

긴급공사를 제외한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.

5

보도 파손자 원상복구

파손한 사람이 부담한다

보도블록 파손시 시민 형세 대신, 파손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.

6

거리 모니터링단 운영

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

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행 불편사항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7

이렇게 신고하세요

보도블록도 바로바로 A/S 접수!

파손된 보도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여,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.

8

보도를 보행자품으로

보도상 주정차·적치물 단속, 오토바이통행금지

계도 및 단속으로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 보행자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.

9

보도블록 은행(bank) 운영

깨진 곳은 바로 찾아 매운다!

보도블록 공사시 일정량을 비축하여 파손 시 쉽게 교체하겠습니다.

10

함께 합니다

서울시, 자치구, 유관기관과 함께

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보행안전도우미 운영 개선

☎ 문의 및 해당부서 : 도 로 과

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대상

- 연장 10m 이상의 임시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
 - 단, 공사구간 전체를 가림막으로 차단하여 일반 시민의 현장접근을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보도공사장은 배치대상에서 제외(지하철공사, 도시개발사업 등)
- 배치기준

임시보행로 연장(m)	배치인원	근무위치	비 고
10m이상 ~30m미만	1인/일	임시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안내	‘보통인부’ 노임단가 적용
30m이상	2인/일	임시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	

☐ 운영 개선계획

- 공사 계약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자 배치 서약서 제출
 - 근거 : ‘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제’ 시행방안(‘13.2.25, 보도환경개선과-2648)
- 현장 착공시 보행안전도우미 명단 제출 의무화
- ※ 보행안전도우미 인증제(‘14.4.17, 보행환경개선과-5458)

() 도로포장 실천 10계명



1. **[포트홀 제로]** 눈에 띄게 확 줄이겠습니다.

도로소파 발견 시 24시간 내 보수하겠습니다.

2. **[울퉁불퉁 도로 짝]** 커피가 쏟아지지 않는 편안한 도로

차안에서도 불편함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도로 및 맨홀 주변 짝 펴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.

3. **[초일류 명품도로]** 첨단기술로 시공, 관리

첨단기술로 시공하고, 유지 관리하여 도로포장 품질수준이 세계 초일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4. **[한 번의 부실시공도 영업제한]** 원스트라이크 아웃!

차도포장 재시공 사유 발생 시 서울시 공사입찰 제한하여 부실한 도로포장공사 관행의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.

5. **[도로포장공사 실명제]** 한 번 하는 공사 제대로

강화된 기준과 책임시공제에 구축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6. **[단속 강화]** 도로파손 행위 엄중 단속

겨울철과 장마철에는 함부로 도로를 파내는 공사나 과적한 차량의 도로통행은 엄중하게 단속 하겠습니다.

7. **[운전자들 안전하게]**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

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홍보로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8. **[도로 모니터링단 운영]** 언제 어디든 불편사항 신고

모든 시민이 도로 감시자가 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세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9. **[달인이 되겠습니다]** 세계 속 자랑스런 도로포장 장인

서울시 도로포장공사 담당자는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.

10. **[함께 합니다]** 서울시, 자치구, 유관기관과 함께

자치구,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에서 제도까지 고쳐가겠습니다.

공사장 현수막 및 표지판 개선

☑ 서울시 지시안



광화문~송례문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거리

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.



2005. 12. 31까지 마치겠습니다.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. 서울시건설안전본 강수동 (T. 3708-2402) 현장소장 홍길동 (T. 324-9512)

Pantone 423 C

Pantone 425 C

☑ 개선안



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

조성하는 도로공사입니다.



2011.12.31까지 마치겠습니다.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. 중랑구청 도로과 0000(T.2094-2680) 현장소장 홍길동(T.123-4567)

pantone 361c

pantone 2335c

☑ 서울시 지시안

900

100

100

100

1800

100



공사안내

광화문~송례문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거리

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.

공사기간 : 2005. 1. 1 - 12. 31

시 공 자 : 에이큐건설
홍길동 (T. 781-3456)

시 행 정 : 서울시건설안전본부
강수동 (T. 3708-2402)

Pantone 423 C

☑ 개선안



공사안내

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

조성하는 도로공사입니다.

공사기간 : 2011.1.1~12.31

시 공 자 : 에이큐건설
홍길동 (T.781-3456)

시 행 정 : 중랑구청
000 (T.2094-2680)

pantone 2335c

기타 참고자료

1. 공통분야

- 1-1.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개선사례(계약심사과-10880, 14.7.14)
- 1-2.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개선(기술심사담당관-6309호, 14.4.9)
- 1-3.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(행정2부시장방침 제27호, 14.2.6)
- 1-4. 건설공사 설계·설계변경 가이드라인(기술심사담당관, 2014.1월)
- 1-5.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-633호, 14.10.23)
- 1-6.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78호, 14.5.23)
- 1-7.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(국토해양부, 2010.6.28)
- 1-8.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68호, 14.5.21)
- 1-9.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166호, 14.10.13)
- 1-10.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97호, 14.5.23)
- 1-11.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(국토교통부, 2012.1월)
- 1-12.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7호, 14.10.22)
- 1-13.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 2012.10월)

2. 도로분야

- 2-1.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(건설교통부, 2007.5월)
- 2-2. 보도용 블록포장 공사비 적용기준 개선(보도환경개선과-840호, 13.1.27)
- 2-3. 건설현장 축종기 설치 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847호, 12.7.18)
- 2-4. 보도블록포장 품셈 적용기준 개선계획(행정2부시장방침 제300호, 14.10.10)
- 2-5. 라이스토핑공법에 대한 원가산출 개선품셈(계약심사과-10204, 14.6.27)
- 2-6.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서 작성 개선(토목부-6831, 14.4.10.)
- 2-7. 미끄럼에 취약한 기존 경계석 개선계획(도로관리과-2922, 11.2.17)
- 2-8.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수립시행(행정2부시장방침 제408호, 10.12.20)
- 2-9.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(기술심사담당관, 2009.12월)
- 2-10.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(보도환경개선과, 2013.3월)
- 2-11. 투수 블록포장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(도로관리과, 2011.8월)
- 2-12. 도로분야 표준과업 지시서(국토해양부, 2012.12월)